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60
----------	-------

발의연월일 : 2024. 1. 11.

발 의 자 : 최형두 · 위성곤 · 김희곤
최인호 · 어기구 · 이성만
김성원 · 강기윤 · 김예지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에너지 안보개념이 부상하고 있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치나 경제적 위기 발생 등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핵심에너지 비축량이 부족하거나 수송이 어려워질 경우 에너지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시간 지연 또는 운송비용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주요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측의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미리 대응하도록 핵심에너지 비축 등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주요내용

가. 관리방안과 수송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심에너지, 에너지안보,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비롯하여 핵심에너지 수송에 관여하는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 핵심에너지 화주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대비하고 에너지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핵심에너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에너지를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급안정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수

단공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송수단 공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화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및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기타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철광석,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요소수 등의 핵심에너지 비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내외적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송위기 관리방안과 수송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에너지”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산업 생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자원으로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철광석,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요소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2. “에너지안보”란 핵심에너지의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에너지 비축량 확보 및 수송체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 그 저해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국가의 안

전보장과 국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 “핵심에너지 수급관리”란 핵심에너지의 원활한 수요와 공급의 기준, 핵심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현황 및 전망, 에너지안보 위기 시 필요한 핵심에너지 비축량 파악 등 핵심에너지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에너지안보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유지 및 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란 전쟁·테러 등 국가 안보위협 또는 해적행위 발생, 자연재해, 감염병의 유행,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국제법 또는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핵심에너지 수송에 위기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5.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이란 핵심 에너지를 수송하는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6. “핵심에너지 공급기관”이란 핵심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공급 기반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7.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란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통해 국내외에서 핵심 에너지를 수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란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개발, 설

계,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핵심에너지 화주(貨主)”란 핵심에너지를 화물로 하여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 등 화물인 핵심에너지에 대하여 화주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취급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과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 핵심에너지 화주 등의 상생협력 및 상호 동반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 핵심에너지 화주는 국가의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핵심에너지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제5조(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에너지안보 및 수송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핵심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에너지 수급 전망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핵심에너지 수급위기 진단,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5. 핵심에너지 관리기반 구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핵심에너지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핵심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이하 “수급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에너지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수급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와 관련된 국가전략·정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에너지 현황의 진단·평가 및 공급망(국내외에서 핵심에너지를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4. 핵심에너지의 비축의무 및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핵심에너지 수급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대비하고 에너지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와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 핵심에너지 화주, 관련 단체 및 에너지안보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핵심에너지의 가격
2. 핵심에너지 비축물량, 재고·수급 현황 및 전망과 수출·수입량
3. 핵심에너지 해외 공급망 관련 위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의 핵심에너지 재고·수급 현황과 전망
4. 그 밖에 에너지안보,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핵심에너지의 비축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에너지 공급기관은 핵심에너지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핵심 에너지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에너지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핵심에너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 에너지를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핵심에너지 공급기관의 장은 그 비축 핵심에너지의 품목·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비축대상 핵심에너지, 비축물량, 비축된 핵심에너지의 관리 및 실태보고와 비축의무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핵심에너지의 비축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핵심에너지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의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핵심에너지의 비축계획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응

제11조(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심에너지 수송위기관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핵심에너지 수송수단별 수송현황에 관한 사항
3.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진단에 관한 사항
4. 수송위기 단계별 수송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핵심에너지 수송선박공급자,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화주 등의 상생협력 및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교류에 관한 사항
6.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핵심에너지 수송선박공급자,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화주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핵심에너지 수송 기반 구축과 관련된 국제협력,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핵심에너지의 수송위기대응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①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토교통부 협조를 통해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이하 “수송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송위기대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에너지 수송분야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

- ③ 그 밖에 수송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송위기대응위원회의 기능) 수송위기대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핵심에너지 수송위기관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핵심에너지 수송수단별 수송현황에 관한 사항
3.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진단에 관한 사항
4. 수송위기 단계별 수송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지원 또

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를 지체 없이 파악하고 대응수단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핵심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5조(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의 의무 등) ①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별로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핵심에너지 수송 및 에너지안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중대한 영업 손실을 받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의 의무 등) ①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공급함에 있어 핵심에너지 수송수단 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핵심에너지 수송 및 에너지안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

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 수단공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의 공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중대한 영업 손실을 받은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핵심에너지 화주의 의무 등) ① 핵심에너지 화주는 에너지안보 및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상 가능한 범위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수송수단(선박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화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중대한 영업 손실을 받은 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및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기타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한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핵심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제20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에 필요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 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3.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공동 정책 조사·연구

4.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기술개발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2.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등에 관한 사업

3.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사업

4.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와 핵심에너지 화주의 상생협력 촉진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상호 동반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

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인력양성 및 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산업육성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교육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또는 관련 연구소·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